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본 조례안은 2020년 06월 08일 심현정 의원이 발의하고, 2020년 06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 임.

1. 제안이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의 최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표준안에 따라 기존의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안 목적 및 정의 (안 제1장)
- 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안 제2장)
- 다.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행동강령 내용(안 제3장 ~ 제5장)
- 라.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안 제6장)
- 마.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안 제7장)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관련법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의 최근

개정이 있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조례반영 권고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에 개정의 취지가 있습니다.

○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개정 내용

-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방지, 사적 노무 요구금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등을 내용으로 개정(2019.03.25.시행)
-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시 사례금을 받는 경우만 신고 및 사후 신고 가능의 내용으로 개정(2020.5.27.시행)

상기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기존조례 5장 17조 형식에서 7장 46조 형식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구성은 크게 「지방자치법」 제38조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제2장)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하여 할 행동강령(제3장 ~ 제5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안 제6장에서는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안 제7장에서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내용이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강원도 내 7개 시군에서(홍천군, 동해시, 원주시, 삼척시, 태백시, 횡성군, 영월군) 표준안에 따라 개정·실시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권고 요청에 따라 표준안을 따른 것으로 개정에 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4. 참고자료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공직자 윤리법」, 「민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